

제272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 1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6월 12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63
- 나. 제 출 자: 강선영 의원 외 5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6월 4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
2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대한적십자사 조직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.(안 제3조~제4조)
- 라.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마.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21조, 제22조

나. 협조부서 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사업 규정(안 제3조)
-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4조)
-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시행규칙을 규정(안 제6조)

다. 종합 의견

-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는 20개동 20개 봉사회와 317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,
-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사회봉사활동, 구호활동 등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

제21조(사업계획의 제출 등)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(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)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용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